



건축허가(신고)

접수 전 꼭 확인 바랍니다

건축허가(신고) 보완이 주요 민원처리 지연 사유가 되고 있어 반복되는 보완사항을 안내하니 허가(신고) 접수 전 꼭 확인하여 보완 없이 신속·정확한 허가(신고) 업무처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01 건축계획심의, 도로굴착심의 대상 확인(대상인 경우 심의후 접수)
- 02 개발행위허가, 도로점용허가 등 복합처리시 협의(관련도면 등)서류 첨부 여부
- 03 시행규칙 제6조제1항(별표2) 제출도서의 충실한 작성(필수사항 기재여부 포함)
 - (예) 대지의 종·횡단면도에 원지반선 및 계획지반선 미표기 등
- 04 건축허가신청 대지의 소유권 및 사용 권원 확보여부 확인
 - (예) 등기부등본 소유자확인, 토지사용승낙서(인감날인) 및 인감증명 첨부
- 05 사용승인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와 다른 맞지 않은 사항표기
 - (예) 설계지내력, 내진설계적용·내진능력, 조경면적, 건축선 후퇴면적 등

06 공동주택(20세대 이상) 신청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첨부

07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 허가 신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첨부
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(부동산개발업의 등록)

-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·대수선·리모델링·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(부동산의 이용권 포함)을 판매·임대(법 제2조, 영 제2조)하고자 하는 자

건물(연면적)	주상복합(비주거용 연면적)	토지
3천㎡(연간5천㎡)이상	3천㎡(연간5천㎡)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30%이상	5천㎡(연간1만㎡)

08 다중이용, 필로티형식 건축물, 아파트, 연립주택 등 설계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

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(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)

-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: 6층 이상, 특수구조, 다중이용, 준다중이용,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
-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
 -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공사
- 전기, 승강기, 피뢰(건축전기설비기술자, 발전배전기술자), 급수, 배수, 환기, 난방, 소화배선, 승강기, 가스 등(건축기계설비기술자, 공조냉동기계기술사), (가스)가스기술사
 - 연면적 1만㎡이상(창고제외)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(아파트, 연립주택 포함)

09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 첨부 및 확인자 날인 여부

- 적용대상(연면적 500㎡이상), 근거(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설계기준 고시 제2019-172, 2019.10.1. 별지 서식1호)

10 건축물(2층 ~ 11층)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 및 외부에 식별 표시

- 대피공간이나 비상용승강기 설치 아파트 제외 (건축법 제49조제3항, 동 시행령 제51조제4항 관련)

